

# 唐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정 순 모\*\*

1. 머리말
2. 禁軍의 범위와 南衙禁軍의 운용
3. 北衙禁軍의 운용과 한계
4. 맺음말

## 1. 머리말

隋末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차 천하를 통일한 唐은 武德 연간이래 3차례의 律令 반포를 통해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그 율령 체계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부터 당은 이상적인 율령국가로 인식되었고 여기에 '국제성'을 더해 중국인이 가장 자부하는 왕조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화려했던 겉모습과 달리 唐의 황위 계승은 의외일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武德-開元시기조차 황위 계승이 玄武門의 변을 포함하여 5차례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 사학과 교수

정변으로<sup>1)</sup> 결정되었고 安史亂 이후에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 환관에 의해<sup>2)</sup> 좌우되었던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律令에 의한 통치 시스템의 완비와 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 지배자 교체에 안정성이 결여되었던 현실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중국의 전통 왕조에서 황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은 일상적인 것이었어도, 唐朝의 경우 항상 禁軍, 특히 北衙禁軍이 궁정의 諸勢力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고 禁軍의 장악 여부가 정변의 성패에 직결되고 있었다는 점에<sup>3)</sup>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율령에 의해 운용되어야 할 禁軍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禁軍이란 천자가 거처하던 禁中의 衛兵을 뜻하는데, 당 전반기 금군은 넓은 의미에서 장안성, 즉 京師의 궁성 북쪽에 주둔하는 北衙禁軍과 궁성 남쪽에 주둔하는 南衙禁軍으로 구성되었다.<sup>4)</sup> 남아금군은 府兵에 의해 구성된 율령제의 틀 속에서 운용되던 군대였다. 隋의 律令·典章 대부분을 답습한 당은 兵制에서도 貞觀10년(636) 隋의 부병제 일부만을 수정하여 중앙·지방·변경 방어를 통일된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였다.<sup>5)</sup> 부병제는 중앙의 금군을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官制·均田制·租庸調制 등과 원활한 연계도 필수적이였다.<sup>6)</sup> 반면 북아금군은 건국초 율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唐 皇室과 사적 유대가 긴밀한 군대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왕조의 건국자들은 私的 유대가 긴밀한 군대에 의지하여 천하 통일을 완성했어도, 정세가 안정되면 이들을 바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兵制

1) 『資治通鑑』(北京: 中華書局, 1987) 권207, 神龍元年(705) 正月條; 권208, 景龍元年(707) 7月條; 권209, 景雲元年(710) 6月條; 권210, 開元元年(713) 7月條 참조.

2) 『二十二史劄記』(北京: 中國書店, 1990) 권20, 「唐代宦官之禍」, pp.262-4.

3)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古籍出版社, 1982, pp.50-59; 汪錢, 「玄宗時期之禁軍及其統帥」, 『漢唐史論稿』, 北京大學出版社, 1995, pp.247-258.

4) 『新唐書』(正史는 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하였다) 권50, 「兵志」, p.1330, “夫所謂天子禁軍者, 南北衙兵也. 南衙, 諸衛兵是也. 北衙者, 禁軍也.”

5)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참조.

6) 이를 律令體制라고 할 수 있는데(曠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融の括戸」,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296-305 참조) 그 중 均田制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다.

운용의 틀 속에서 금군을 운영하던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랜 분열 시기를 종식시킨 隋 역시 西魏·北周 이래의 部族의 색채가 짙고 지방호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군대를 府兵制의 틀 속에서 운용하고자 했다.<sup>7)</sup> 비록 고구려 원정 등과 같은 失政으로 그 완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당 전반기 禁軍의 편제와 운용 등에 관한 모습은 금군의 두 계통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律令制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당 조가 의도했던 제도적 취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禁軍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적지 않다. 우선 남아금군은 부병제 연구로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지만<sup>8)</sup> 금군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금군을 북아금군에 한정시킨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남아금군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북아금군의 연구에서 취급되었다. 陳寅恪은 당조의 ‘關中本位’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북아금군은 ‘衛宮之軍’, 남아금군은 ‘衛城之軍’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북아금군이 당 전반기 궁정 정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지적하여 이후 금군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북아금군에 관한 연구는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엄밀한 사료 비판과 諸書의 異同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sup>9)</sup> 그 중 황제의 소수 정예부대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는<sup>10)</sup> 북아금

7)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世界歴史』5, 東京, 岩波書店, 1971, pp.410-9.

8) 府兵制에 관한 연구 성과는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舎, 199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谷霧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Edwin G. Pulleyblank,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p.61-3; Lai, Swee Fo, The Military and Defence system under the Tang dynasty, Ph.D. The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86, pp.20-52, 참조.

9) 蒙曼, 『唐代前期北衙禁軍制度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張國剛, 『唐代北衙六軍述略』,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北京, 文津出版社, 1994, pp.143-156; 張國剛, 『唐代禁衛軍考略』, 『南開學報』1999-6, pp.146-155; 寧志新, 『唐代的羽林軍初探』, 『河北師院學報』1990-4; 寧志新, 『說唐初元從禁軍』, 『河北師院學報』1989-3; 巴新生, 『唐代禁軍組織的演變與宦官典禁軍制度』, 『天津師專學報』1984-2; 黃修明, 『唐代前期的北衙禁軍』, 『南充師院學報』1985-4, pp.76-81; 王篋, 『玄宗時期之禁軍及其統帥』, 『漢唐史論稿』, 北京大學出版社, 1992; 金滸, 『唐前期의 北衙禁軍』, 『中國學報』, 2007; 菊池英夫, 『唐府兵制의 成立過程と北衙禁軍의 起源』, 『東洋史學』13, 1955, pp.61-96. 菊池英夫, 『唐代北衙禁軍考』, 『史淵』70, 1956, 등 참조.

10) 趙雨樂, 『唐前期北衙의 騎射部隊-北門長上到北門四軍의 幾點考察』, 『陝西師範大學學報』(哲社

군의 모체가 남야의 諸衛였고 북야에서 운번 宿衛했던 제도에서 북야금군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추측하였다. 북야금군은 유연하게 운용된 제도로 남야금군이 경직되게 운용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도<sup>11)</sup> 시사성이 풍부한 추론이다. 이밖에도 금군의 구성 인원과 그들의 자질에 대한 것,<sup>12)</sup> 금군과 경사 숙위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다룬 것,<sup>13)</sup> 禁軍의 사법 문제에 대한 연구<sup>14)</sup> 등과 『新唐書』兵志에 대한 충실한 교감과 주석도<sup>15)</sup> 제서의 사료 비교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성과이다.

이와 같이 금군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북야금군에 집중되어 있고 남야금군은 부병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 전반기 금군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북야금군에 관한 율령 규정이 없던 시기 律令制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금군의 편제와 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도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남·북야금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운용에 대한 제도적 취지와 그 실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 이것이 律令制 운용에 얼마나 부합하였으며, 잦은 정변에 禁軍이 쉽게 동원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이나 그 한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軍制에서 율령 국가 唐의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禁軍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군을 북야금군에 한정시킨 듯한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율령제의 틀 속에서 금군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 남야금군과 북야금군의

版)2002-2, pp.74-81.

11) 雷家驥, 『隋唐中央權力結構及其演進』,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5, pp.445-461.

12) 薛平控, 「試論開元天寶以後的長安商人與禁軍」, 『唐都學刊』1992-3; 周敏, 「論唐代京都‘禁軍俠少’及在唐詩中之表現」, 『西北大學學報』(哲社版)2000-3, pp.132-135.

13) 李錦綉, 「禁軍及京師宿衛兵費」, 『唐代財政史稿』(上卷) 第3分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pp.1184-1186.

14) 王素, 「唐五代的禁衛軍獄」, 『中華文史論叢』1986-2, pp.117-129.

15) 唐長孺, 『唐書兵志箋正』, 北京, 科學出版社, 1957; Robert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et traité de l'armée*, 2 vols., Leiden: E. J. Brill, 1947.

편제와 운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금군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생각해 보고 싶다.

## 2. 禁軍의 범위와 南衙禁軍의 운용

### 1) 禁軍의 범위

禁軍이란 보통 천자가 거처하는 禁中을 守衛하는 衛兵을 의미한다. 중국의 어느 왕조든 최고 지배자인 천자를 守衛하는 군대가 있기 마련이지만<sup>16)</sup> 당대 禁軍이란 용어는 玄宗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당 전반기 금군의 역할을 수행했던 군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新唐書』에는 正史 중 兵志란 항목을 새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天子의 禁軍이란 南·北衙의 군대(兵)이다. 南衙는 諸衛의 군대가 그것이고 北衙는 禁軍이다.<sup>17)</sup>

여기서 衙란 황제의 거처<sup>18)</sup> 혹은 관청이란 의미로 황제는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남측에 정식 행정기관을 두었고 그곳을 南衙라 총칭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황제의 사적 공간으로<sup>19)</sup> 북문에 해당하는 玄武門은 황제의 사적, 내지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문이었고 만약 정식으로 行幸할 경우

16) 王鏡輪·向斯, 『中國古代禁衛軍-皇帝衛隊始末-』,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참조.

17) 『新唐書』 권50, 『兵志』, p.1330, “夫所謂天子禁軍者, 南北衙兵也. 南衙, 諸衛兵是也. 北衙者, 禁軍也.”

18) 『新唐書』 권23上, 『儀衛志 上』, p.481, “唐制, 天子居曰衙, 行曰駕, 皆有衛有嚴.”

19) 唐太宗이 南衙의 일과 北門의 일을 구분하여 魏徵의 비판을 받았다거나(『貞觀政要』〈北京: 中華書局, 1991〉 第2卷, 納諫第5, p.72) 南衙는 제상 소관이라는 언급 등은(『資治通鑑』 권203, 垂拱2년 4월, p.6441; 『資治通鑑』 권207, 神龍元年 正月, p.6580) 북쪽은 황제의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에는 남쪽의 정문인 承天門에서 朱雀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sup>20)</sup> 『신당서』 기사는 京師의 남아와 북아에 배치된 군대를 모두 금군으로 인정하면서도 말미에 북아에 배치된 군대를 특별히 禁軍이라 지칭하였기 때문에, 금군이란 개념에 남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금군과 북아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금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두 禁軍 개념은 『신당서』가 宋代에 편찬되었던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송대 병제에서 天子의 衛兵을 금군이라 하고 그 임무는 京師를 방어하고 征戍에 대비하는 것이었다.<sup>21)</sup> 이 임무는 당 전반기에 바로 부병이 담당했던 것으로 『신당서』 兵志 편찬자가 當代의 관점에서 당의 남아 소속의 병사도 금군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당대 '禁軍'을 지칭할 경우 당 후반기의 禁軍만을 지칭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京師 역시 황제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고, 龍朔2년(662) 이전 禁中을 수위하는 금군에 대한 율령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 전반기 禁軍으로 府兵을 주축으로 했던 남아의 16衛를 도외시할 수 없다. 즉 남아의 군대 역시 그 임무가 경사를 방어하는 이상, 금군이라 해도 큰 차질은 없고 율령제 하에서 경사의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신당서』 금군에 대한 설명은 금군이란 호칭에 집착하지 않고 16衛의 임무를 금군과 동일하게 파악했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新唐書』 兵志에 적시된 당대 兵制 변화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대략 唐이 천하를 소유했던 200(300?)여 년간 병제의 대세에 3번의 변화가 있었다. 초기 전성 시기에는 府兵이었고, 府兵이 폐지된 후에 彊騎였으며,

20) [부록]에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 참조.

21) 『宋史』 권187, 「兵志1」, 禁軍, p.4569, “宋之兵制, 大概有三. 天子之衛兵, 以守京師, 備征戍, 曰禁軍, 諸州之鎮兵, 以分給役使, 曰廂軍, 選於戶籍或應募, 使之團結訓練, 以爲在所防守, 則曰鄉兵.” 北宋초 禁軍에 대한 것은 王曾瑜, 『宋朝兵制初探』, 北京, 中華書局, 1983, pp.9-53 참조.

22) 程大昌 역시 禁軍을 南·北衛에 주둔하는 군대를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나아가 두 군은 漢代의 南·北軍처럼 상호 견제를 도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雍錄』(北京: 中華書局, 2005) 권8, 「唐南北軍」, pp.173-4.

驍騎도 폐지되면서 方鎮의 병사들이 성하였다. 당말에 이르러 疆臣과 悍將의 병사들이 천하에 포진하여 天子 역시 京師에 병사를 두어 禁軍이라 하였다.<sup>23)</sup>

인용문에서 금군이란 용어를 당말에 한정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병제의 대세는 일단 府兵-驍騎-方鎮의 병사로 개괄할 수 있다. 여기서 황제와 수도를 직접 수위하는 군대를 금군이라 할 때, 方鎮의 병사는 節度使의 군대로 황제의 수위와 직접적 관계가 없고 府兵과 驍騎는 금군의 충원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 전반기 禁軍의 이해는 부병제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 2) 南衙禁軍의 운용

唐은 貞觀10년(636) 隋制를 계승하여 12衛 東宮 6率府 제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 鎮戍兵까지 내지의 衛士, 즉 府兵으로 교체 근무(이 경우 防人)하게 하여 여기서 중앙·지방·변경을 하나의 체계로 결부시켰고 이를 중앙의 尙書省 兵部에 직속하게 한 중앙집권적 兵制를 완성시켰다.<sup>24)</sup>

開元26년(738)에 편찬된 『唐六典』에는<sup>25)</sup> 중앙의 禁軍으로 후술할 북아금군인 羽林軍과 더불어 16위 10솔부의 명칭과 편제, 연혁, 職官과 조직 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16위의 명칭은 左右衛·左右驍衛·左右武威·左右威衛·左右領軍衛·左右金吾衛·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이고 10率府는

23) 『新唐書』 권50, 「兵志」, pp.1323-4, “蓋唐有天下二百餘年, 而兵之大勢三變, 其始盛時有府兵, 府兵後廢而爲驍騎, 驍騎又廢, 而方鎮之兵盛矣. 及其末也, 疆臣悍將兵布天下, 而天子亦自置兵于京師, 曰禁軍.”

24)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舍, 199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등 참조.

25) 『唐六典』(北京: 中華書局, 1992) 권24-25, 참조. 아울러 그 번역은 김택민 주역, 『譯註 唐六典』(上)(中)(下), 서울, 신서원, 2003, 2005, 2008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였다.

太子府의 太子左右衛率府·太子左右司禦率府·太子左右清道率府, 太子左右監門率府·太子左右內率府이다. 이들 제위의 병사들은 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 太子左右監門率府·太子左右內率府를 제외하고 모두 府兵 衛土로서 좌우위에서 좌우금오위까지 각각 驍騎·豹騎·雄渠·羽林·射聲·依飛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졌다. 제외된 4衛와 4率府는 府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각각 龍朔2년에 衛로 변모되었다. 4衛의 임무는 諸門의 禁衛, 宮殿의 侍衛였고 다른 12衛의 임무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점에서 南衛禁軍에 4衛를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諸衛의 최고 지휘관은 좌우위 이하 정3품의 대장군이 각 1명, 종3품의 장군 2명이 있고 그 아래로 倉曹·兵曹·胄曹參軍事 이하 府·史 약간 명이 있다. 16위 대장군과 장군 이하 武官들의 品階와 정원은 동일한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부록]의 표-1과<sup>26)</sup> 같다. 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좌우위의 봉거도위(5인)를 제외하면 좌우위에서 좌우금오위까지 소속 職事官의 품계, 명칭, 정원이 유·내외 모두 동일하였다. 좌우위의 奉車都尉는 天寶 이전 모두 '儀容美麗'한 자로 충당하여 副車를 모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상설 관직은 아니며 대규모 行幸시 다른 관으로 攝行하였고<sup>27)</sup> '有其名而無其人'이라 한 사실에서<sup>28)</sup> 실제적으로 감문위·천우위를 제외한 12衛는 동일한 체계와 정원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府兵의 징발권은 尙書省 兵部에 있어 황제의 勅書와 兵部의 符契가 필수적이었고 12衛 장군들은 지휘권만 있을 뿐이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앙에서는 각 절충부에 부병을 징발시켜 임시로 임명된 장군에 의해 통솔하게 하였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시킴으로써 장군과 부병 간의 私的 유대가 차단되어 兵亂을 예방할 수 있었다.<sup>29)</sup>

26) 『唐六典』 권24-25, 참조.

27) 『通典』(北京: 中華書局, 1988) 권29, 「職官典, 職官11」, 三都尉, p.812, “天寶以前悉以儀容美麗者充選. 奉車都尉五員, 掌馭副車, 不常置. 若大備陳設, 則以餘官攝行, 屬左右衛也.”

28) 『新唐書』 권49상, 「百官志 4上」, p.1281, “奉車都尉, 掌馭副車. 有其名而無其人, 大陳設則它官攝. 駙馬都尉無定員, 與奉車都尉皆從五品下.”

29) 『新唐書』 권50, 「兵志」, p.1328, “初, 府兵之置, 居無事時耕於野, 其番上者, 宿并京師而已. 若四方有事, 則命將以出, 事解輒罷, 兵散于府, 將歸于朝. 故士不失業, 而將帥無握兵之重,

남아금군의 주요 임무는 각 위가 지정된 위치에서<sup>30)</sup> 궁성과 황성, 경성 전체를 주야로 수비하는 일이다. 각 위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左右衛는 황제가 正殿(太極殿)에 있을 때 양쪽 계단에 서고, 正門(嘉德門)<sup>32)</sup> 안에서는 동서의 廂에서 俠門隊<sup>33)</sup> 역할을 수행하였다. 承天門·嘉德門 안에서는 대장군이 지휘하였다. 좌우효위는 正殿에서 좌우위 다음에 서고, 正門 밖에서는 동서의 廂에서 俠門隊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제문을 지킬 때는 左廂 제문의 內事와 右廂 제문의 外사를 맡았다. 아울러 皇城 四面과 宮城의 내외는 좌우위와 함께 助鋪를<sup>34)</sup> 분담하여 맡았다. 좌우무위는 정전에서는 효위 다음에 서고, 가덕문 안에서는 東西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좌우위위는 정전에서 여러 대(隊)로 계단에 서고 長樂門·永安門 안에서는 두 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방어를 맡을 때는 황성의 동서 쪽의 助鋪를 맡았다. 좌우령군위는 정전에서 여러 대로 계단에 서고 長樂門·永安門 밖에서는 두 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방어를 맡을 때는 황성의 동서 쪽의 助鋪와 苑城의 諸門을 맡았다. 좌우금오위는 경성을 주야로 순찰하는 임무 외에도 車駕 출입시 선두에 섰다.<sup>35)</sup> 좌우감문위는 명칭대로 궁성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이 주된 직무로서 궁성을 출입하는 자들의 門籍과 궁성의 문을 통해 반입·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기록인 門傍을 관장

所以防微漸絕禍亂之萌也.”

- 30) [부록]의 표-2, 표-3 참조. 주변 관아 등은 [부록]에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 참조.  
 31) 『唐六典』 권24-25, 참조.  
 32) 淸, 徐松, 李建超 增訂, 『增訂唐兩京城坊考』, 西安, 三秦出版社, 1996, p.5.  
 33) 俠門隊는 ‘立門仗’이라고도 하며 諸門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新唐書』 권23상, 『儀衛志 上』, p.482, “內外諸門以排道人帶刀捉仗而立, 號曰立門仗. 宣政左右門仗·內仗, 皆分三番而立, 號曰交番仗. 諸衛有俠門隊·長槍隊. 承天門內則左右衛俠門隊列東西廊下, 門外則左右騎衛俠門隊列東西廊下. 長樂·永安門內則左右威衛俠門隊列東西廊下, 門外則左右領軍衛俠門隊列東西廊下. 嘉德門內則左右武衛俠門隊列東西廊下. 車駕出皇城, 則俠門隊皆從. 長槍隊有漆槍·木槍·白檉槍·樸頭槍.”  
 34) 助鋪란 鋪·助鋪所라고도 하는데 街道를 경비하는 경비 초소를 말한다. 『唐律疏議』(北京: 中華書局, 1993) 권8 衛禁, 제80조에서는 조포 근무시 대리 근무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杖刑100대)이 자세히 보인다.  
 3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p.783-789.

하였다. 궁전문과 성문 출입은 모두 左入右出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입궁자는 좌감위가, 출궁자는 우감문위가 관할하였다.

16위의 관직과 배치를 살펴볼 때 좌우위·좌우효위·좌우무위·좌우위위·좌우령군위·좌우금오위의 대장군 이하 집극까지 그 品階와 定員이 동일하였다. 이는 혹 발생할지 모르는 병력 동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견제를 도모하고 병권을 尙書省 兵部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儀仗隊와 宮城 수비를 위한 각 위의 위치에서도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좌금오위는 皇城 동쪽의 永興坊, 우금오위는 황성 서쪽의 布政坊에 위치하고 있는데 永興坊이 더 북쪽에 있다. 황성 내에서도 좌우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있으면서도 교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杜牧이 16衛가 禁省의 사이사이에 끼여 있었다는 표현은<sup>36)</sup> 바로 그 임무 수행에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역시 예기치 못한 동란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견제의 조치로 파악된다.

府兵 운용의 기본 단위는 折衝府라 할 수 있는데 唐의 최전성기 전국에 692개가<sup>37)</sup> 설치되었고 兵部가 통솔하는 折衝都尉(장관), 果毅徒尉(부장관), 別將(보좌관)이 兵籍·訓練·動員·指揮를 관할하였다. 절충부 하부 단위는 團-旅-隊-火로 구성되었는데 그 수장은 校尉-旅正-隊正-火長이라 하였고 그 인원수는 각각 200-100-50-10인으로 구성되었다. 절충부 역시 3등급으로 구분되어 上府는 6團으로 1,200명, 中府는 5단으로 1,000명, 下府는 4단으로 800명의 衛士를 통솔하였다.<sup>38)</sup>

36) 『樊川文集』(上海古籍出版社, 2007) 권5, 「原十六衛」, pp.89-91, “署字分部, 夾峙禁省.”

37) 折衝府의 수는 清代이래 많은 학자들의 규명에 의해 630여 개가 확인되어 『二十五史補編』에 수록되어 있는데 최근 墓誌銘 자료 등에 새로 확인된 것도 많다. 각지 府名에 대한 구체적 정리에 관해서는 張沛 編著, 『唐折衝府匯考』, 西安, 三秦出版社, 2002 참조.

38) 『唐六典』 권25, 「諸衛折衝都尉府」, pp.644-645, “諸府, 折衝都尉各一人, 左·右果毅都尉一人. 諸府折衝都尉之職, 掌領五校之屬, 以備宿衛, 以從師役, 總其戎具·資糧·差點·教習之法令. 凡衛士三百人爲一團, 以校尉領之, 以便習騎射者爲越騎, 餘爲步兵. 其團十人爲火, 火備六馱之馬. 每歲十一月, 以衛士帳上尙書, 天下兵馬之數以省聞. 凡兵馬在府, 每歲季冬, 折衝都尉率五校之屬以教其軍陣戰鬥之法, 捉捕持更者, 晨夜有行人必問, 不應, 則彈弓而嚮之, 復不應, 則旁射, 又不應, 則射之. 晝以排門人遠望, 暮以持更人遠聽, 有衆而嚮 則告主帥. 左·右果毅都尉掌貳都尉. 別將一人, 長史一人, 兵曹參軍事一人, 材老弱少壯, 各爲之簿,

절충부의 절반은 京畿·關內에 집중되었고 河東·隴右·河南에 일부가 설치되어 이들 지역에 설치된 절충부가 90% 이상이었다.<sup>39)</sup> 이는 唐朝의 關中本位<sup>40)</sup>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후술할 바와 같이 番上의 어려움에 따른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았다. 折衝府 偏在에 따른 세역 상의 불균형이 예상되긴 해도 西州 蒲昌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응하는 복역을 부과하여 부담의 공평함을 기하려는 唐朝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다.<sup>41)</sup> 각 절충부에는 병적에 등록된 병사의 정원이 있고 3년에 한번 관할 지역의 丁男(21~59세)에서 衛士를 富戶多丁의 원칙 하에 징발하여, 兵器·裝備·糧食을 스스로 갖추게(自辯)했고 그 기간 중에는 租·庸·調·雜徭 등의 의무는 면제되었다. 이들은 평소 농경에 종사하다 농한기에 府에서 훈련을 받았고 京師에서 원근에 따라 1~2개월씩 衛士로서 상경 근무(上番)하였는데 이 때 원래 소속된 衛와 率府에 배속되어 儀仗·宿衛·警備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재역 기간 중 1회는 국경의 鎭이나 戍에 파견되어 3년 혹은 1년간 防人으로서 변경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sup>42)</sup>

경사에 근무하는 부병은 내·외부 구별되었다. 내부는 五府三衛 및 東宮三府三衛를 가리킨다. 五府三衛는 親衛1府, 勳衛·翊衛 각 2府로 구성되며 총 4,963명이 배속되었다. 東宮 삼위는 각1부로 삼부 삼위가 된다. 내부 이외는 모두 외부가 된다.<sup>43)</sup> 내부의 위사는 모두 고위관료의 자손으로 예를

---

以進退爲. 長史掌判兵事·倉儲·車馬·介冑之事, 及其簿書·會要之法. 兵曹掌兵吏糧倉·公廩財物·田園課稅之事, 與其出入句檢之法. 每月, 簿番上衛士之數以上衛. 每歲, 簿錄事及府·史·捉·口·品于補上年月·姓名, 以上于州, 申考功·兵部”; 『新唐書』 권50, 「兵志」, p.1325, “太宗貞觀十年, 更號統軍爲折衝都尉, 別將爲果毅都尉, 諸府總曰折衝府. …凡府三等, 兵千二百人爲上, 千人爲中, 八百人爲下. 府置折衝都尉一人, 左右果毅都尉各一人, 長史·兵曹·別將各一人, 校尉六人. 士以三百人爲團, 團有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 十人爲火, 火有長.”

3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pp.153-158;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8-11.

40) 『陸宣公全集』(上海: 世界書局, 1936) 권1, 「論關中事宜狀」, p.57, “實近虛遠, 居重馭輕…學天下不敵關中, 則居重馭輕之意明矣.”

41) 張國剛, 「唐代府兵淵源與番役」, 『歷史研究』(K22, 1990-2)1989-6 참조.

42)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15-31.

43) 『新唐書』 권49상, 「百官4上」, pp.1281-2.

들면 2품·3품관 子를 親衛에 補任시키고, 2품관 曾孫·3품관 孫·4품관 子, 職事官 5품의 子·孫 등은 勳衛와 東宮親衛에 보임시켰다. 삼위는 고위 관료 자손이 資蔭에 의한 出身의 단계이기도 하였다.<sup>44)</sup>

長安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금군의 비율은 얼마일까?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절충부의 총수를 최소 600으로 어렵잡고 1부의 정원이 평균 1,000이라 하면 당의 상비군은 총 60만이다. 이들은 衛士이고 京師와 東都에 上番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5番으로 계산하면 1번이 12만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수치는 開元12년(724) 張說이 부병 충원의 곤란함으로 召募에 의한 曠騎 충원을 거론할 때 정확히 12만을 언급한<sup>45)</sup> 것에서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운용될 때의 경우로 실제 구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京師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衛士가 과연 上番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절충부의 40%가 경사 주변 500리 내에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1회 상번시 5만명 정도는 항시 경사에서 고유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도적 취지와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5~12만 사이의 衛士가 항상 경사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당 전반기 府兵은 禁軍의 주축으로 부병제의 운용을 통해 금군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府兵制는 중앙의 兵部가 인사권, 감독, 지휘 명령권을 장악하고 경사 방위를 위한 12위 등의 중앙군, 절충부 중심의 지방군, 鎮戍 중심의 변경 방어를 담당한 변경군이 통일적으로 운용되었다. 병사의 공급원은 일반 농민이었고 그 근무는 요역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그 임무의 범위와 관할 구역이 넓어 황제 신변의 친위군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까닭에 친위군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남아금군의 병력은 府兵의 衛士였다. 하지만 高宗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

44)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p.170; 金滌, 「唐前期 皇帝宿衛의 구조」, 『魏晉隋唐史研究』 제5집, 1999, pp.52-60.

4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82, “開元十二年, 張說奏, 於三輔揀五尺八兵十二萬人, 謂之曠騎, 置於南衛.”

원정 등 부병의 役이 과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균전제의 이완에 따른 토지점병으로 逃戶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도호의 발생은 부병의 회전을 단축시키게 되므로 더욱 도호 발생을 촉진시켰고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sup>46)</sup> 開元 연간 括戶 정책은 바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변 이민족의 강성과 羈縻지배의 파탄으로 결국 募兵으로 병력을 충원해야<sup>47)</sup> 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3. 北衙禁軍의 운용과 한계

唐 高祖 李淵이 太原에서 거병할 때 동원된 군대는 모두 3만이었는데 장안으로 진격 중 각지의 수많은 병력을 확보하여 장안 점령시 그 규모는 20만으로 증가하였다. 당은 이들을 중핵으로 10년에 걸쳐 정치·군사적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sup>48)</sup> 천하통일 후 당은 이들 대부분을 귀향시켜 부병으로 근무시켰지만 일부는 장안 부근에 황제의 신변 보호의 목적에서 정착시켰다.

건국초 太原에서 정의를 따른 군사들로 (장안에) 머물러 (황제를) 宿衛하여 심복이 되어 귀향을 원하지 않는 자가 3만이였다. 渭水 북쪽 白渠 근처의 7縣 중 絶戶의 기름진 토지를 이들 義師 집에 분급하여 永業(田)으로 삼았고 縣에 太原의 토지를 두어 父兄弟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龍首監에 (軍)營을 두어 거처하게 했는데 또한 臣의 高祖는 監內에 집을 짓고 이들을 元從禁軍이라 하였습니니다. … 예전에 元從禁軍들 중에 늙고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그 집 子弟나 鄉親들로 대신하게 하여 父子軍이라고 하였습니니다.<sup>49)</sup>

46) 栗原益男, 「府兵制의 崩壞와 新兵種」, 『史學雜誌』73-2·3, 1964 참조.

47) 菊池英夫, 「府兵制度의 展開」, 『岩波講座世界歷史』5, 東京, 岩波書店, 1971, pp.436-9.

48) 정순모, 「당태종 이세민-명군의 조건과 명암」, 『인물로 읽는 중국사』,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pp.117~122.

49) 『玉海』(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0) 권138, 「兵制」, 鄴侯家傳, p.2571. 國初太原從義之師,

元從禁軍과 그 후손들의 父子軍은 당 황실에 절대 충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군대로서 당은 이들에게 장안 근처의 비옥한 토지를 지급하여 정착시키고 황실의 宿衛를 맡겼다. 여기서 황제 개인의 친위군이라 할 수 있는 북아금군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들 원종금군의 구성이나 배치, 존속 기간은 관련 사료의 미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기사에서 軍營을 설치하여 거주하게 하였다고 한 점, 武德 중에 敬君弘이 驃騎將軍으로서 玄武門의 屯營兵을 관장했던 사실에서<sup>50)</sup> 玄武門 북쪽에 주둔하던<sup>51)</sup> 특별한 군대로 잔존했던 것은 분명하다.

太宗의 즉위와 함께 원종금군은 바로 개편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당 건국 과정에서 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터이지만 玄武門의 변으로 집권한 태종의 입장에서 秦王府 소속의 군대를 가장 안전하게 느꼈을 터이고<sup>52)</sup> 후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원종금군의 개편은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貞觀초 北衙 7營의 설치와 貞觀12년(638) 左·右屯營의 설치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貞觀中 北衙 7營을 설치하였는데 후에 左右羽林軍으로 바뀌었다. 모두 힘 있고 용맹한 자로 충당시켰으며 매월 1營에 10명을 뽑아 올렸다.<sup>53)</sup>

---

愿留宿衛爲心膂不歸者六萬，于渭北白渠之下七縣絕戶膏腴之地，分給義師家爲永業，于縣下置太原田以居其父兄弟。于龍首監置營以處，并爲臣高祖起第于監內，謂之元從禁軍。…初元從禁軍老及歿，必取其家子弟鄉親代之，謂之父子軍。 원문의 ‘六萬’은 ‘三萬’(『新唐書』 권50, 『兵志』, p.1330)에 의거하였다. 鄴侯家傳에 대한 사료적 이용에 관해서는 Albert E. Dien, The use of the eh-hou chia-chuan as a Historical Sourc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4, 1974 참조.

50) 『舊唐書』 권187上, 「忠義傳 上」, p.4872, “武德中, 爲驃騎將軍, 封黔昌縣侯, 掌屯營兵於玄武門, 加授雲麾將軍.

51) 이곳은 長安城 북쪽과 직접 연결된 三苑(禁苑·東內苑·西內苑)이란 곳으로 唐代 用兵處로 자주 이용된 곳이었다(『雍錄』 권9, 『唐三苑圖·唐三苑說』, pp.195-6, “凡此三苑也者, 地廣而居要, 故唐世平定內外禍亂, 多於苑中用兵也.”) 漢의 上林苑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곳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朴漢濟, 『唐 長安城 三苑考-前漢 上林苑의 機能과 비교하여-』, 『歷史學報』 第188輯, 2005, pp.188-195 참조.

52)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武漢大學出版社, 1992, p.441.

53)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貞觀中置北衙七營, 後改爲左右羽林軍. 皆選才力驍勇者充, 每月一營十人爲番當上.”

貞觀初…또 北衙 7營을 설치하면서 재능 있고 용맹한 병사를 선발하여 매월 1營에 번상시켰다.<sup>54)</sup>

貞觀 12년 비로소 玄武門에 左右屯營을 설치하였는데 諸衛의 장군들이 통솔하게 하였고 飛騎라 하였다.<sup>55)</sup>

보통 北衙禁軍의 정식 출현은 龍朔2년(662) 左右羽林軍의 설립에서<sup>56)</sup>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위 기사는 좌우우림군이 元從禁軍-北衙7營-左右屯營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규모는 7營의 경우 매월 70명이 근무하였던 점에서 소규모였던 것 같은데 左右屯營으로 계승되면서 확대되었을 것이다. 左右屯營에 소속된 병사는 '飛騎'라 하였고 그 자격은 2等戶 이상에 키 6尺의 건장한 자로서 弓馬는 4次上, 翹關은 다섯 번을 들어 올려야 하며, 또 米 5斛을 메고 30步를 갈 수 있어야 선발될 수 있었다.<sup>57)</sup> 飛騎 중에서도 재주와 힘이 세고 날래며 활을 잘 쏘는 자를 선발하여 '百騎'라 하였다. 이들은 五色袍 등을 입고 六閑馬를 타는 권리를 누리며 太宗 扈從의 임무를 맡았다.<sup>58)</sup> 병사의 자격 조건을 2등호로 한 것은 황실과 밀접히 관련된 고위 자제들로<sup>59)</sup> 제한하여 당 황실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元從禁軍에서 左右屯營까지 그 지휘 계통은 모호하고 임시 방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武德 연간 屯營兵을 관할했던 敬君弘은<sup>60)</sup> 정4품

54) 『新唐書』 권50, 「兵志」, pp.1330-1331, “又置北衙七營, 選材力驍壯, 月以一營番上.”

5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十二年, 始置左右屯營於玄武門, 領以諸衛將軍, 號飛騎.”

56)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龍朔二年, 改左右屯營爲左右羽林軍.”

57)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其法. 取戶二等以上·長六尺闊壯者, 試弓馬四次上·翹關舉五·負米五斛行三十步者. 復擇馬射爲百騎, 衣五色袍, 乘六閑馭馬, 虎皮韉, 爲游幸翊弁.”

58)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59) 물론 2等戶를 직접 고위 관료의 자제로 동일시 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일반민 대부분이 8·9等戶였던 사실을(日野開三郎, 「玄宗時代を中心として見たる唐代禾田地域の八·九等戶に就いて」, 『社會經濟史學』21-5·6, 1955 참조) 감안하면 2等戶는 현실적으로 고위 관료의 자제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큰 차질을 없앨 것이다.

60) 『舊唐書』 권187上, 「忠義傳 上」, p.4872.

武散官의 驃騎將軍<sup>61)</sup> 뿐 그 구체적인 실직은 알 수 없다. 貞觀 시기 毛盛·張士貴도 각각 游擊將軍과 屯衛將軍의 武散官으로 屯營兵을 거느렸다는 기록이<sup>62)</sup>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職事官의 기록이 중시되었던 것에서 본다면 정식 관직을 제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 혹은 황제가 사적으로 屯營兵을 지휘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薛仁貴의 경우 游擊將軍과 雲泉府果毅로서 北門長上을 겸하여 屯營兵을 통솔하였는데<sup>63)</sup> 별도의 관직을 받지 않고 差遣 형식으로 屯營兵을 통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아금군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元從禁軍 등은 南衙의 장군에 의해 兼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지휘 체계는 율령 규정에 없었던 점에서<sup>64)</sup> 황제의 사적 의지에 의거하여 운용되었던 私兵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北衙禁軍은 龍朔2년(662) 左右羽林軍이 설립되어 16위와 더불어 禁軍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독립된 군사력으로 공인되었다. 즉 북아금군의 율령제 편입은 이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직은 諸衛와 거의 유사하고(〔부록〕 표-4 참조) 임무는 北衙의 禁兵에 대한 통솔, 左右廂에 배치되는 飛騎의 儀仗 등을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 운용 방침은 불확실한데 황제와 가장 근접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규모는 『唐六典』에 “羽林禁兵의 旗幟와 名數는 비밀이니 아무도 알 수 없어 생략 한다”<sup>65)</sup> 라고 하여 극비 사항이었다.

武則天 시기 羽林軍은 군대다운 체제를 갖추고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垂拱元年(685) 武則天이 禁軍을 재편성할 때 羽林郎 6,000명을 두었고<sup>66)</sup> 武攸寧을 우림대장군으로 처음 임명하여 16衛와 대등한 체제를 갖추

61) 『隋書』 권28, 「百官志 下」, p.785.

62)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上(上海古籍出版社, 1992), 貞觀152, 「大唐右領軍果毅榮陽毛君墓誌銘并序」, pp.104-105 ; 顯慶56, 「大唐故輔國大將軍荊州都督虢國公張公墓誌銘并序」, pp.263-265.

63) 『舊唐書』 권83, 「薛仁貴傳」, p.2780. 雲泉府는 京兆府에 속한 折衝府이다(張沛, 앞의 책, pp.39-40).

64)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1986) 권155, 「兵志7」, p.1351, “...而其元從禁軍亦猶官制員外之置.”

65) 『唐六典』 권25, 「諸衛府」, p.643, “羽林禁兵旗幟·名數, 秘莫得知, 略之.”

66) 『唐會要』(上海古籍出版社, 1991) 권72, 「京城諸軍」, p.1530, “垂拱元年五月十七日, 置左右

었다. 또한 羽林獄과 같은 별도의 옥사를 두어 군대의 기강을 엄정하게 했다.<sup>67)</sup> 이후 羽林軍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天寶7載(748) 그 定額은 15,000명이었다.<sup>68)</sup>

한편 좌우둔영에 속한 飛騎 중 '百騎'는 태종의 외출시 경호를 맡았다. 이들은 武后 시기에 '千騎', 中宗 시기 '萬騎'로 개칭되었고 左右營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使職을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sup>69)</sup> 使職은 丞外官으로서 율령제 운용에 배치되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sup>70)</sup> 이들은 일종의 정예부대로서 禁軍중에서도 황제와 가장 친밀한 親衛隊였다. 그 규모는 초기 100명이라 하였지만 '千騎', '萬騎'라는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계속 확대되었다. 확대된 萬騎는 이용기가 中宗과 韋后를 주멸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즉 우림군 내 특수 정예부대를 포섭한 이용기는 先天2년(713) 7월 龍武將軍 王毛仲의 좌우만기영 부대로 좌우우림군을 장악한 태평공주 세력을 일소하는데 성공하였다. 左右萬騎는 이미 左右羽林과 더불어 北門四軍이라 칭해졌지만, 開元26년(738) 左右萬騎營의 명칭을 左右龍武軍으로 바꾸고 그 관원은 모두 羽林軍과 같은 체제로 정비하였다.<sup>71)</sup> 계속된 궁정 정변으로 우림군 내 정예부대의 확대가 결국 대장군 이하 군지휘권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금군의 한 축인 北衙는 元從禁軍으로부터 北衙7營과 左右屯營으로 개편되었다가 左右羽林軍 계열과 羽林軍 내 특수 부대로서 百騎一千騎

---

羽林軍, 領羽林郎六千人.”

67) 『資治通鑑』 권203, 光宅元年(684) 春正月條, p.6428, “有飛騎十餘人飲於坊曲, …一人起, 出詣北門告之. 座未散, 皆捕得, 繫羽林獄. 言者斬, 餘以知反不告皆絞, 告者除五品官. 告密之端自此興矣.”

68) 『唐會要』 권72, 『京城諸軍』, p.1293, “七載七月二十日勅, 左右羽林軍飛騎, 請準後加數, 通舊一萬五千人爲定額, 六番上下.”

69) 『舊唐書』 권44, 『職官志3』, pp.1903-4, “太宗選飛騎之尤驍健者, 別署百騎, 以爲翊衛之備. 天后初, 加置千騎, 中宗加置萬騎, 分爲左右營, 置使以領之.”

70) 礪波護, 『三司使の成立について-唐宋の變革と使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4-10.

71)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2;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自開元以來, 與左右羽林軍名曰北門四軍. 開元二十七年, 改爲左右龍武軍, 官員同羽林軍也.”

—萬騎—左右龍武軍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두 계열로 성장한 군대라고 할 수 있고 그 규모는 天寶 연간 약 3만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궁성 북쪽 禁苑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으로 경사를 방어하는 16위의 군대와 별개였다.

이들 북아금군의 병력 공급은 律令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임시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감찰 역시 기대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元從禁軍 3만명에게 당조 창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비옥한 토지를 주고 경사 주변에 거주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이것이 당조의 關中本位 정책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關中의 백성들은 율령에 의거하여 衛士로 동원되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공신 등에게 통솔되었고 황제의 사적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武后시기 원종금군 계통의 병력을 羽林軍으로 재편한 것은 당조가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들을 율령제 하에서 운용하려 했던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북아금군의 독립은 남아금군이 형해화되는 것과 연동되었던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즉, 高宗 시기부터 각종 遠征과 府兵役의 과중함은<sup>72)</sup> 禁軍 유지에 틈을 노출하였다. 龍朔2년(662) 부병의 越騎·步射로 羽林軍에 충원시켰고<sup>73)</sup> 先天2년(713)에도 羽林·飛騎를 衛士에서 충원하도록<sup>74)</sup> 하여 南衛의 전력에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官戶·戶奴를 萬騎에 충원시키기도 하였다.<sup>75)</sup> 戶奴의 존재는 병사 충원에 어려움을 전해 주면서 동시에 北衛禁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무예가 뛰어난 자를 직업 군인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종이 韋后를 주멸할 때 큰 공을 세운 왕모중은 籍沒된 고려인으로 官戶 출신이었고 그 용맹함은 남달랐다고

72) 礪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融の括戶」,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305-319.

73)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高宗龍朔二年, 始取府兵越騎·步射置左右羽林軍, 大朝會則執仗以并階陛, 行幸則夾馳道爲內仗.”

74) 『唐會要』 권72, 「京城諸軍」, p.1531;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83, “先天二年正月十月詔, …自今以後, 羽林·飛騎先於衛士中簡擇.”

75) 『資治通鑑』 권210, 景雲元年(710) 8月條, p.6655; 『陳子昂集』(上海: 中華書局, 1960) 권8, 雜著, 「上軍國機要事」, pp.178-9, “及募諸色奴充兵討擊者, 是捷急之計, 非天子之兵.”

한다.<sup>76)</sup> 開元 연간 左右龍武軍이 성립되면서 그 일부는 현종의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던 자들의 子弟들이었다.<sup>77)</sup> 결국 당이 율령제의 틀에서 북아금군을 운용하려 했어도 皇位 계승을 둘러싼 황실의 갈등은 가장 신뢰할 만한 군대를 필요로 했고 이것은 당이 표방한 율령 국가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 4. 맺음말

당 전반기 禁軍의 한 축인 南衙禁軍은 府兵制를 기초로 兩京에 근접한 지역의 농민을 정기적으로 番上시켜 公의인 운용 체계 하에 京師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 농민들은 비록 번상의 임무라는 다소 과중한 부담을 지긴 했지만 당의 건국에 절대적 공헌자였고 경사에 가까운 각종 이점으로 당 황실과 더불어 천하 통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기 충분했다. 하지만 高宗 이후 고구려 원정 등 그 부담이 과중해졌고 동시에 균전제의 이완으로 逃戶 발생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府兵 番上의 회전율이 크게 단축되어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다시 도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자연히 남아금군의 병력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일부는 북아금군에까지 충원되면서 병력의 감소에 대응하여 결국 召募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명백히 律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張說이 曠騎로 남아금군을 편성하게 된 것은 府兵制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禁軍의 다른 한 축인 北衙禁軍은 元從禁軍에서 시작되었다. 원종금군은 李淵의 太原 거병시 핵심 무장 세력으로 장안 근처에 거주하면서 황제 호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당 황실과 긴밀한 결속력을 과시

76) 『舊唐書』 권106, 「王毛仲傳」, pp.3252-3255.

77)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又置左右龍武軍, 皆唐元功臣子弟并外州人.”

하긴 하였지만 私兵의 성격을 탈피할 수 없었다. 당 건국 이후 이들을 공적인 체제 내에 편제시키려던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는 사적인 군대를 공적인 영역으로 승화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南衙의 장군들로 이들을 통솔하게 하고 召募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玄武門의 變으로 집권한 李世民은 즉위 후 이들을 율령체제에 바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태종 자신의 황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이때부터 북아금군은 황위 계승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당 황실의 사적 군대는 황제의 신변 보호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병력의 확보에 세습이나 召募에 의지함으로써 율령제라는 당의 통치 이념과 크게 괴리되었다. 武后시기 羽林軍의 성립은 사적인 측면을 일소한 것이었어도 이제는 남아금군이 병력 확보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결국 북아금군이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병력 확보의 대세는 召募에 의한 방법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唐朝의 두 계열 禁軍의 편제와 운용 원리는 상호 모순적이었다. 唐朝의 국가성격이 安史亂 이후 완전히 돌변한 계기는 南衙-北衙의 편제와 운용 면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禁軍 편제에 관한 제도적 실상을 통해 다소 거칠게 南·北衙 禁軍의 상호 모순적인 운용 원리를 지적하였는데 실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2. 6. 30,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禁軍, 南衙禁軍, 北衙禁軍, 府兵, 12衛, 16衛, 羽林軍, 龍武軍, 北門四軍

[附錄]

표-1: 16衛의 職事官 구성과 정원

	(左·右)衛	驍衛	武威	威衛	領軍衛	金吾衛	監門衛	千牛衛
정3품	大將軍(1인)	●	●	●	●	●	●	●
종3품	將軍(2)	●	●	●	●	●	●	●
중5품하	奉車都尉(5)							
정6품상	司階(2)	●	●	●	●	●		
정6품하								
중6품상	長史(1)	●	●	●	●	●	●	●
중6품하								
정7품상								
정7품하	中候(3)	●	●	●	●	●		
중7품상								
중7품하								
정8품상	錄事參軍事(1)	●	●	●	●	●	●	●
정8품하	倉曹參軍事(2) 兵曹參軍事(2) 騎曹參軍事(1) 冑曹參軍事(1) 司戈(5)	●	●	●	●	●	(1) (1)	●
정9품하	執戟(5)	●	●	●	●	●		
流內합계	31*2	26*2	26*2	26*2	26*2	26*2	7*2	5*2
流外합계	38*2	35*2	35*2	35*2	35*2	35*2	22*2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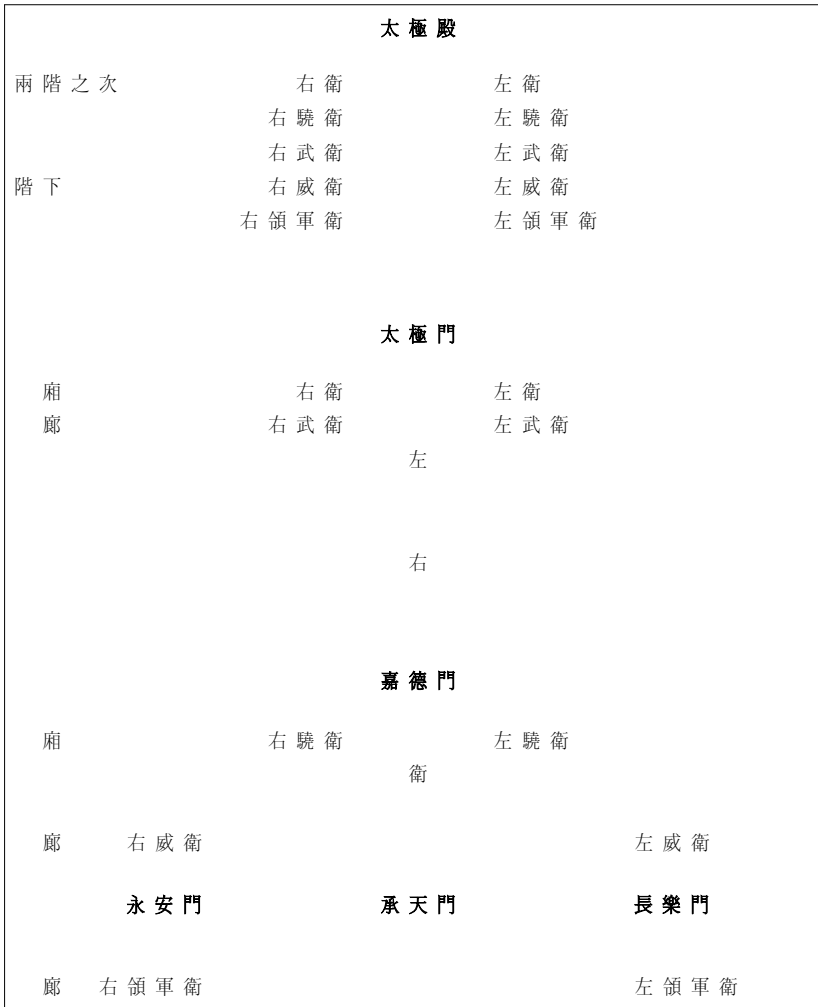
표-2: 皇城내 16衛의 官衛

廣運門	承天門	長樂門	嘉福門
-----	-----	-----	-----

	右衛 右監門衛 右千牛衛	左衛 左千牛衛	右清道率府 右內率府 右監門率府	左內監率府 左清道率府
	右驍衛 右武衛	左監門衛 左武衛 左驍衛	右司禦率府 右衛率府	左司禦率府 左衛率府
	右威衛 右領軍衛	左領軍衛 左威衛		

含光門	朱雀門	安上門
-----	-----	-----

표-3: 南衛禁軍의 宮城 배치



宮城의 내외, 皇城 사면의 助鋪: 左右衛, 左右驍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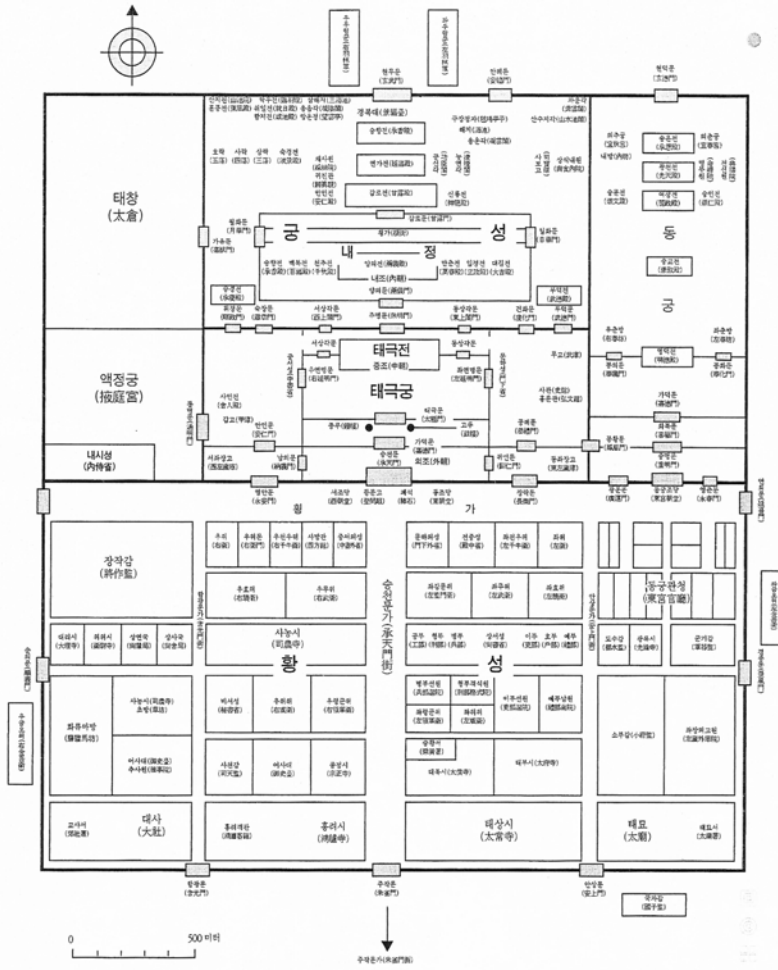
皇城의 동서 助鋪: 左右威衛, 左右領軍衛

禁苑의 諸門: 左右領軍衛

표-4

	左·右羽林軍衛
정3품	大將軍(1)
종3품	將 軍(2)
정6품상	司 階(2)
정6품하	
종6품상	長 史(1)
종6품하	
정7품상	
정7품하	中 候(3)
종7품상	
종7품하	
정8품상	錄事參軍事(1)
정8품하	倉曹參軍事(1) 兵曹參軍事(1) 冑曹參軍事(1) 司 戈(5)
정9품하	執 戟(5)
유내합계	23*2
유외합계	27*2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78)



78) 세오 다쓰히코 지음, 최재영 옮김,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서울, 황금가지, 2006, p.137.

<ABSTRACT>

##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Palace Armies in Early Tang China

Chung, Soon-mo

The southern palace army was for defending the capital city, a principal axis of the palace army, which was basically managed by Fubing system in early Tang China. The peasants who had to serve in the southern palace army by rotation, felt honoured to be the palace soldiers, the burden they took was very heavy though.

But after Gaozong, due to Koguryo expedition, the peasant soldiers' burden went beyond their abilities, therefore, the number of runaway soldiers increased. It was an inevitable result of Tang dynasty to change its way of recruit. It adopted the mercenary soldiers. That Zhangyue organized the southern palace army with Guoqi symbolized the end of Fubing system. It was very obvious that hiring soldiers was against the Tang's official recruiting way, the Fubing system.

Another axis of the palace army, the northern palace army, was started with the original palace army. The original palace army was a core armed force of Gaozu, the founder of Tang dynasty. The original palace army wa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oyal family, it was not surprising that it was not managed by Tang's official recruiting system. Therefore, Tang dynasty constantly tried to organize the northern palace army under the Tang's official recrui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ang dynasty tried to reduce the ratio of the mercenary.

However, Li Shimin(Taizong) who took the power though the Xuanwumen coup, didn't organize them under the Code. It must be caused by the his fear of losing the throne. Thereafter, the northern palace army had an absolute influence upon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The palace

army might have given the royal family a sense of security, but that royal private army was managed by hiring soldiers, that was far from the Tang's official military system.

During the Wuzetian period, the establishment of Yulin forces overcame the royal private characteristics in the palace army, but ironically the southern palace army could not be managed by Fubing system any more. And the northern palace army was changed into legal army but they had to recruit soldiers by hiring.

Ironically, Tang's two palace armies were managed by contradicting ways. We could find contradicting factors in the management of southern palace army and northern palace army.

Key Words : Palace Armies, southern government office, northern government office, fubing troops, sixteen guards, twelve guards, yulin forces, longwu forces, north gate four forces